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5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조경태·김영식·안병길

김예지 • 이상헌 • 박수영

백종헌 · 김승수 · 윤재갑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의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의 혼란한 치안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현재의 변화된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영아의 생명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영아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므로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데도 영아를 보호하여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오히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1조 삭제).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51條(영아살해) 直系尊屬이 恥	<u><</u> 삭	제>			
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					
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					
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아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					
<u> 役에 處한다.</u>					